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10. 20. 규정 제897호

1. 개정이유

-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행정재산으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
 - ※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는 기부,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학교시설 이용료 단가의 물가상승분 반영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대학교 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학회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 학교시설운영위원회 심의·의결(1차: '23.9.1., 2차: '23.9.21.)
 - ** 재정위원회 심의·의결(1차: '22.4.28., 2차: '23.4.26.)
- 이에, 상위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의 제한 및 「국유재산법」 사용료 면제 규정과 상충되는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사용료 면제 범위 및 대상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 무상 규정을 사용료는 무상, 공공요금 및 청소비는 징수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 ※ 상위법과 부합하게 개정한 국립대 사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강의실 및 체육시설(실내 빙상장) 시설사용료 및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담당부서와 현장 실무의견*을 반영하고, 그간 미반영된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단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 * (강의실 및 체육시설) 교무처·훈련학생처·시설총괄팀, (현장 실무) 미화반장
 - ** (강의실 사용료) 물가상승률 23% 적용(2010년 대비 2022년 누적 합계), (훈련장 사용료) 현행 단가 대비 100% 인상 적용(훈련학생처 협의 완료)
-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사용료 면제 규정과 상충되는 우리 대학교 규정 제14조(시설이용료의 면제) 제6호* 개정 및 제7호** 삭제(안 제14조)
 - * (개정 필요) 대학발전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삭제 필요)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 그 밖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나. 타 대학 사례조사

연번	대학명	규정내용
1	방송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건물이용료 무상, 공공요금 등 징수 · 기타 개인 및 단체: 전액 징수 ※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적용
2	경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육과 연구, 학생활동, 홍보 및 공공의 행사 등은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육과 연구,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학생활동, 홍보 및 공용행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4	부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사용자에게는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며, 관리 산정기준과 적용단가는 매년 2월 중에 공고
5	경인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으나 공공요금 등은 따로 징수
6	전주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지자체 및 기타 공익단체의 행사, 학술행사 등에 대해 총장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7	진주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그 사용 목적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학생활동 등 공익에 부합되면서 학교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8	한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직원의 교내행사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대학, 학과, 연구소, 부소기관 등이 주최·후원하는 외부행사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등재된 국립대학교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우리 대학교 강의실 담당부서(교무처), 체육시설장 및 실내빙상장 담당부서(훈련학생처), 공공요금 산출부서(시설총괄팀), 현장실무의견(미화원 반장) 등 ※ '23.9.1.자 및 '23.9.21.자 학교시설운영위원회 의결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사용기관	이용료종류			비고
		사용료	공공요금	청소비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무상	징수	징수	기관간의 업무협조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2	대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징수	징수	징수	
3	기타 기관	징수	징수	징수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적용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명		사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기본료	사용료			
강의실	40인 이하	24,600	1,220	610	170	3,000	1,560
	80인 이하	36,900	1,360	680			3,120
합동강의실		123,000	2,880	1,440			5,980
대회의실		61,500	2,500	1,250			5,460
대강당(필승관)		615,000	78,500	39,250			119,600
체육과학관 무용실		61,500	2,800	1,400			13,260
체육과학관 다목적실		49,200	2,440	1,220			14,560
필승관 다목적실		61,500	2,340	1,170			11,960
태권도학과 실기실습실		123,000	2,820	1,410			16,380
특수체육교육과 실습실		61,500	1,620	810			6,500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명		기 본 사용료	초 과 사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청소비
				기본료	사용료			
대운동장	전체	1,000,000	200,000	-	-	170	-	3,000
	트랙	200,000	100,000					
핸드볼장		400,000	100,000	16,220	8,110		134,940	
역도장		200,000	28,000	2,880	1,440		11,700	
복싱장		200,000	28,000	3,640	1,820		13,260	
펜싱장		200,000	120,000	26,200	13,100		21,320	
체조장		200,000	60,000	24,600	12,300		138,840	
배드민턴장		400,000	52,000	14,800	7,400		78,780	
근대5종 펜싱장		200,000	80,000	3,200	1,600		13,260	
태권도장		200,000	24,000	3,220	1,610		24,700	
레슬링장		200,000	40,000	2,920	1,460		21,320	
유도장		200,000	32,000	3,160	1,580		17,940	
웨이트장		200,000	40,000	34,240	17,120		41,340	
하키장		400,000	68,000	14,540	7,270	77,390	-	
실내테니스장		200,000	100,000	14,560	7,280	170	108,420	
골프장		200,000	20,000	12,860	6,430	-	-	
수영장		400,000	240,000	12,380	6,190	58,470	165,360	
볼링장		200,000	108,000	22,660	11,330	170	18,980	
싸이클장		200,000	32,000	2,320	1,160	170	7,540	
양궁장		200,000	28,000	24,840	12,420	260	4,940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용 구 분		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기본난방비	청소비
			기본요금	시간당요금			
일 반 대 관 (정기적 기관, 단체)	08:00-22:00	60,000	40,320	20,160	170	35,430	3,000
	06:00-08:00	40,000	40,320	20,160			
	22:00-24:00						
경기대관(대회)		60,000	60,480	30,240			
각종 행사대관	공공행사 및 문화예술	260,000	60,480	30,240			
	일반행사 및 촬영(상업용)	460,000	60,480	30,240			
부 대 시 설	음향설비	50,000원 * 사용일수 + 마이크대수 (5,000원/대)					
	전광판	100,000원 * 사용일수 +(사용시간 * 5,000원)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표 하단의 “예시1) 일반대관 1시간 사용시 : 시설사용료(30,000*1)+ 전기기본요금(26,600)+(14,350*1)+상하수도료(100*1*20)+기본난방비(14,400*1)+청소비(1,000*20)=107,350원” 을 “예시) 일반대관 1시간 사용시 : 시설사용료(60,000*1)+전기기본요금(40,320)+(20,160*1)+상하수도료(170*1*20)+기본난방비(35,430*1)+청소비(3,000*20)=196,210원” 으로 한다.

제1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총장이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으나, 사용료 외의 공공요금 및 청소비 등은 징수

부 칙 (제897호, 2023. 10.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시설이용료) ① 학교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이용료</p>						<p>제13조(시설이용료) ① ----- -----.</p> <p>1. ----</p>									
구 분	사용기관	이용료종류			비고	구 분	사용기관	이용료종류			비고				
		사용료	공공요금	청소비				사용료	공공요금	청소비					
1	공공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 상	무 상	무 상	기관인의 업무 협조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무 상	징 수	징 수	기관인의 업무 협조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대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징 수	징 수	징 수		2	대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징 수	징 수	징 수					
3	기타 기관	징 수	징 수	징 수		3	기타 기관	징 수	징 수	징 수					
<p><u>(단, 상기 적용범위는 사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할 수 있다.)</u></p>						<p>※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적용</p>									
<p>2. 시설사용료 및 공공요금</p> <p>가. 강의실</p>						<p>2. -----</p> <p>가. -----</p> <p style="text-align: right;"><u>(단위: 원)</u></p>									
시 설 명		사용료	공공요금 등				청소비	시 설 명		사용료	공공요금 등				청소비
			전 기 료		상하 수도 료	냉난방비					전 기 료		상하 수도 료	냉난방비	
기본료	사용료			기본료			사용료								
강 의 실	40인 이하	20,000	1,980	1,070	100	1,200	1,000	강 의 실	40인 이하	24,600	1,220	610	170	1,560	3,000
	80인 이하	30,000	2,910	1,570		2,400		3,120							
합동강의실		100,000	1,790	960		4,600		5,980							
대 회의실		50,000	4,190	2,260		4,200		5,460							
대강당 (필승관)		500,000	38,120	20,560		69,950		119,600							
체육과학관 무용실		50,000	560	300		7,040		13,260							
체육과학관 다목적실		40,000	450	240		26,400		14,560							
필승관 다목적실		50,000	630	340		8,660		11,960							
태권도학과 실기실습실		100,000	1,600	860		12,000		16,380							
특수체육교 육과 실습실		50,000	560	300		5,700		6,500							

현 행

나. 체육시설

(단위: 원)

시 설 명	기 본 사용료	초 과 사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청소비	
			기본료	사용료				
대운 전체	500,000	100,000	-	-	100	-	1,000	
동장 트랙	100,000	50,000	-	-		-		
핸드볼장	200,000	50,000	7,120	3,850		66,600		
역도장	100,000	14,000	1,330	760		9,900		
복싱장	100,000	14,000	1,160	630		13,500		
펜싱장	100,000	60,000	16,880	9,110		16,020		
체조장	100,000	30,000	9,400	5,080		66,600		
배드민턴장	200,000	26,000	5,500	3,020		33,000		
근대5종 펜싱장	100,000	40,000	1,870	1,010		9,900		
태권도장	100,000	12,000	1,760	950		46,200		
레슬링장	100,000	20,000	1,330	720		20,400		
유도장	100,000	16,000	1,240	670		33,300		
웨이트장	100,000	20,000	13,710	7,300		32,920		
하키장	200,000	34,000	13,340	7,200		45,520		-
실내 테니스장	100,000	50,000	11,780	6,360		100		83,190
골프장	100,000	10,000	26,600	14,350	-	-		
수영장	200,000	120,000	16,100	8,680	34,300	112,810		
볼링장	100,000	54,000	13,960	7,530	100	13,380		
싸이클장	100,000	16,000	1,240	670	100	9,900		
양궁장	100,000	14,000	16,100	8,680	150	3,680		

※ ~ ※ (생략)

다. 실내빙상장

사 용 구 분	시 설 사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상하 수도료	기 본 난방 비	청소 비	
		기본 요금	시간당 요금				
일반대관 (정기적 기관, 단체)	08:00-22:00	30,000	26,600	14,350	100	14,400	1,000
	06:00-08:00	20,000	26,600	14,350			
	22:00-24:00	20,000	26,600	14,350			
경기대관(대회)		30,000	42,530	22,950			
각종 행사 대관	공공행사 및 문화예술	130,000	42,530	22,950			
	일반행사 및 촬영(사업 용)	230,000	42,530	22,950			
부 대 시 설	음향설비	25,000원 * 사용일수 + 마이크대수 (5,000원/대)					
	전광판	50,000원 * 사용일수 + (사용시간 * 5,000원)					

※ 사용료 징수방법

1. ~ 4. (생략)

5. 사용료 산출방법 : 시설사용료+ 전기
요금+상하수도료+기본난방비+청소비

예시) 일반대관 1시간 사용시 : 시설사
용료(30,000*1)+전기기본요금(26,600)+(1
4,350*1)+상하수도료(100*1*20)+기본난방
비(14,400*1)+청소비(1,000*20)=107,350원

개 정 안

나. ----

시 설 명	기 본 이용료	초 과 이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청소비	
			기본료	이용료				
대운 전체	1,000,000	200,000	-	-	170	-	3,000	
동장 트랙	200,000	100,000	-	-		-		
핸드볼장	400,000	100,000	16,220	8,110		134,940		
역도장	200,000	28,000	2,880	1,440		11,700		
복싱장	200,000	28,000	3,640	1,820		13,260		
펜싱장	200,000	120,000	26,200	13,100		21,320		
체조장	200,000	60,000	24,600	12,300		138,840		
배드민턴장	400,000	52,000	14,800	7,400		78,780		
근대5종 펜싱장	200,000	80,000	3,200	1,600		13,260		
태권도장	200,000	24,000	3,220	1,610		24,700		
레슬링장	200,000	40,000	2,920	1,460		21,320		
유도장	200,000	32,000	3,160	1,580		17,940		
웨이트장	200,000	40,000	34,240	17,120		41,340		
하키장	400,000	68,000	14,540	7,270		77,300		-
실내 테니스장	200,000	100,000	14,560	7,280		170		108,420
골프장	200,000	20,000	12,880	6,430	-	-		
수영장	400,000	240,000	12,380	6,190	58,470	165,360		
볼링장	200,000	108,000	22,660	11,330	170	18,980		
싸이클장	200,000	32,000	2,320	1,160	170	7,540		
양궁장	200,000	28,000	24,840	12,420	260	4,940		

※ ~ ※ (현행과 같음)

다. ----

(단위: 원)

사 용 구 분	시 설 이용료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상하 수도료	기 본 난방 비	청소 비	
		기본 요금	시간당 요금				
일반대관 (정기적 기관, 단체)	08:00-22:00	60,000	40,320	20,160	170	35,430	3,000
	06:00-08:00	40,000	40,320	20,160			
	22:00-24:00	40,000	40,320	20,160			
경기대관(대회)		60,000	60,480	30,240			
각종 행사 대관	공공행사 및 문화예술	260,000	60,480	30,240			
	일반행사 및 촬영(사업 용)	460,000	60,480	30,240			
부 대 시 설	음향설비	50,000원 * 사용일수 + 마이크대수 (5,000원/대)					
	전광판	100,000원 * 사용일수 + (사용시간 * 5,000원)					

※ -----

1. ~ 4. (현행과 같음)

5. -----

예시) 일반대관 1시간 사용시 : 시설사용료
(60,000*1)+전기기본요금(40,320)+(20,160
*1)+상하수도료(170*1*20)+기본난방비
(35,430*1)+청소비(3,000*20)=196,210원

현행	개정안
<p>제14조(시설이용료의 면제)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5. (생략)</p> <p><u>6. 대학발전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7.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u></p>	<p>제14조(시설이용료의 면제) ----- ----- -----.</p> <p>1. 5. (현행과 같음)</p> <p><u>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총장이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으나, 사용료 외의 공공요금 및 청소비 등은 징수</u> <u><삭제></u></p>
	<p><u>부칙(제897호, 2023. 10. 20.)</u>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